

의안번호	2210376
의 퇴 인	조지연의원
회 답 일	2025.6.2.
추계번호	24D2734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총 134억 5,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년 11개월분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합계
조사기간 연장(1년)	5,791	5,929	1,731	13,451

주: 본 추계는 현행 위원회의 인력 및 사업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이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조사기간)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2년(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34조의2(진실규명 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 심의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3항),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함(제4항)	의무규정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3	안 제34조의4(보상금)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결정을 제 28조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법률 제00000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000년 0월 0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4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 하지 아니함	의무규정
6	안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39조의2(기념·추모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실규명결정 사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 및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기념·추모 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5조(조사기간)	0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	안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	진실규명 사건수는 1기 위원회 8,450건, 2기 위원회 11,908건(규명확인 사건 1,056건 포함) 등 20,358건인 반면, 보상심의 활동을 지원하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은 2026년 5월 26일까지로 연도별 보상심의 위원회 회의횟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3	안 제34조의4(보상금)	×	피해자의 수, 노동력상실률 등 피해자 개인별 피해의 정도,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상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4	안 제34조의5(보상금의 지급신청)		
5	안 제34조의1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6	안 제34조의11(조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별법률에 따른 조세특례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의 실질 효과는 없음
7	안 제39조의2(기념·추모사업의 추진)	×	제주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 기념·추모사업이 개별 법률에 따라 시행·지원되고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종료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사기간이 최대 2026년 5월 26일까지로 연장됨
 -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여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그 활동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임
 -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이나, 2024년 1월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분하며, 각각 위원회의 존속기한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함
 - 위원의 임기¹⁾ 및 종합보고서 작성기한²⁾은 위원회 활동 종료일로부터 6개월

1)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2)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후인 2026년 11월 26일임

- 본 추계에서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는 최근 4년간 예산 평균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과³⁾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2]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내역: 2022~2025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평균 (2022~2025)
인건비	5,251	6,094	6,520	6,811	6,169
기본경비	5,924	5,954	6,800	6,686	6,341
사업비	2,566	7,029	3,429	3,266	4,073
합계	13,741	19,077	16,749	16,763	16,583

주: 2020년과 2021년은 인력과 사업이 모두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다만,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피해보상(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금, 보상금 차감 등), 조세면제, 기념·추모사업의 추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피해보상: 피해자의 수, 노동력상실률 등 피해자 개인별 피해의 정도,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상계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별법률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조세감면의 직접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제주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사건 관련 기념·추모사업이 개별법률에 따라 시행·지원되고 있음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2025년 위원회 예산이 12월 31일까지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함

3) 소비자물가상승률·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 (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0	2.4	2.4	2.4	2.4	2.4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現 위원회의 최근 4년간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평균액과 인건비 대비 비중은 다음과 같음

[표 3] 現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예산의 평균액: 2022~2025년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역	합계
인건비	(진화위 인건비) 6,169	16,583
기본경비	(진화위 기본경비) 6,341	
사업비	(진화위 운영) 4,073	

주: 기본경비에는 사무보조 인력(기간제 근로자 23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現 위원회 최근 4년간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평균액을 기준으로 개월수(11개월),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년 11개월분

(단위: 백만원)

구분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합계
조사기간 연장(1년)	5,791	5,929	1,731	13,4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현행 위원회의 인력 및 사업 규모를 참고하여 추정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assembly.go.kr